

등록번호	의약과-16508
등록일자	2015.7.14.
결재일자	2015.7.1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가족보건팀장	의약과장	보건소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연원	박상주	정연훈	이준영	代이경현	07/15 문석진
협 조	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팀장 주무관	임근래 이창조 김오녀			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3조	정책기획담당관	행정규제심사	규제 해당 없음	-
	감사담당관	부패영향평가	원안 동의	
	여성가족과	성별영향분석평가	원안 동의	

서 대 문 구
의약과

「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치매관리법을 상위 관계 법령으로 보완하고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

I 관계법령

-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 (치매상담센터의 설치)
 - 시,군,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를 정함
-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
 -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 가능
 - 이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사업 수행 가능

II 개정이유

-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 상위법 제정되어 조례 상 인용 법령 보완 필요
- 치매지원센터 운영 기간을 제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

III 주요 개정 내용

-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 상위법 제정되어 조례 상 인용 법령 보완
: 「노인복지법」 → 「치매관리법」 (안 제 1조, 제13조)
- 치매지원센터 재 위탁 운영기간을 한 차례로 제한(안 제4조제3항)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하도록

신설 보완 추가 (안 제4조제4항)

- 치매지원센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9조~제11조)
 -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치매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

IV 추진일정

- 입법예고 : '15. 7.22 ~ 8.11 (20일간)
 -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및 법제심사 결과 반영
-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 : '15. 8월 중
- 서대문구의회 의결 : '15. 9월 중
- 공포·시행 : '15. 9월 중

- 붙임 1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